

---

# 입 법 정 보

---

2018-16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 목 차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5
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6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7
6.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7
7.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7
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중소벤처기업부).....	8
9.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
10.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
1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
1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2
13.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폐지(안) (문화체육관광부).....	12
14.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12
1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14
1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6
1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6
18.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7
1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7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8
2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8
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20
2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1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1
2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2
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환경부).....	24
2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환경부).....	26
2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8
2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8
3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9
3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0
3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31
33.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1
34.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2
3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33
3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33



- 경, 심신상태 및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종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도록 현행 시행령 규정을 정비함.
- 라.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15조)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의 연장 범위를 늘려 활동지원급여 갱신 신청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마. 긴급활동지원 신청자격 정비(안 제27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사람’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 긴급활동지원 신청자격 기준을 유지하도록 시행령 규정을 정비함.

##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9. 3.
  - 마감일자 : 2018. 10. 15.
-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활동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7.12.19. 공포, 2019.7.1. 시행)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을 변경하고,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장애 재심사 제도의 폐지(안 제2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갱신 신청자 및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자의 장애 재심사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을 정비함.
- 나.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안

제3조, 안 제4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조사가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을 정비함.

다.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의 변경(안 제15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조사가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로 변경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을 기존에는 기본급여 와 추가급여를 더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변경함.

라.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15조)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마.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개편(안 별표 3)

- 영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 인권 및 자립생활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9. 3.
- 마감일자 : 2018. 10. 15.

○ 자활기업 지원요건인 “구성원 중 수급자가 1/3 이상”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활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활기업 지원요건 완화

- 자활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구성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3 이상이되, 그중 수급자 비율이 반드시 1/5 이상” 되도록 규정하여 자활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하면서도 자활기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 변동 특례 조항(제31조제2항)도 ‘구성원 중 수급자가 1/5 이상’ 에서 ‘구성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1/5 이상’ 으로 변경

나. 특례조항 확대 인정

- 지원 중단으로 인해 자활기업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인정하였으나 자활기업의 장기적 존속을 위하여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 인정

\* 자활기업 처음 참여시 수급자였으나 추후 탈수급한 사람도 수급자로 산정

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9. 3.

● 마감일자 : 2018. 10. 15.

- ' 15년 처음 도입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갱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와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규인증 및 갱신 관련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내 포함 사항에 추진기반 및 사업실적 등을 명시하고, 사업계획서 서식 구체화

- 1) 사업계획 내 포함사항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기반(교육·수상실적 등), 사업실적, 지역과의 연계 등 추가(안 제2조)
- 2) 시행규칙 제2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서 항목별 기술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나. 인증갱신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인증갱신을 위한 사업계획서식 신설

- 1) 사업계획 내 포함사항(사업성과 등), 평가기준(사업계획 달성도, 실현 가능성 등), 갱신절차 등을 명시(안 제4조)
- 2) 사업계획서 서식을 신규(제2호)와 갱신(제2호의2)으로 분리하여 갱신용 서식 신설(별지 제2호의 2서식 신설)

##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 예고일자 : 2018. 9. 4.                      • 마감일자 : 2018. 10. 15.
- 국무회의(' 18.2.20) 시, 법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행령에 대해 정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이 이에 해당되어 개정함

## 6.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9. 4.                      • 마감일자 : 2018. 10. 15.
-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포함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503호, 2016.12.27. 공포, 6.28 시행)됨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 제도가 신설되어 이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와 수수료 환급규정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규정 신설(안 제41조의2 및 별표 6)
    - 1)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필기시험 20,000원, 실기시험 47,000원) 및 관련 자격증 발급 수수료(신규발급 17,000원, 재발급 5,000원) 규정
    - 2) 수수료 반환 근거 규정 마련

## 7.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9. 4.                      • 마감일자 : 2018. 9. 14.
-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경우 2017년 10월 26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3) 심의위원회 운영은 중기부장관 또는 위원 1/3이상 요청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4) 안전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의결로서 위원의 기피 여부 결정

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및 지정 (제7조~제8조)

- 1) 소상공인단체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서를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제출하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실태조사, 의견수렴을 거쳐 중기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을 추천
- 2) 중기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의견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고시

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 (제9조)

- 1) 중기부장관은 대외경제 여건 및 정부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마.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예외적 승인 (제10조)

- 1) 적합업종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대·소상공인 간 사업영역 구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대기업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적용 예외 승인

바. 대기업등의 위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11조~제12조)

- 1) 위반 대기업등에게 6개월 이내(3개월 연장 가능)에서 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공표
- 2) 이행강제금은 [별표 2]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을 명한 날부터 시정명령 이행하는 날까지 부과

사. 기 진출 대기업등 영업범위 제한 권고 (제13조)

- 1)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후에도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등의 영업범위 제한 권고 가능

## 9.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9. 5.                      • 마감일자 : 2018. 10. 15.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 신설과 검진기관 평가를 거부하는 병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질 높은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평가결과 미흡기관 행정처분 신설(삼진아웃제 도입)
    - 1) 검진기관 평가결과가 ‘미흡’ 등급(평가점수 60점 미만) 받아도 검진기관 자격이 유지되어 미흡기관에 대한 퇴출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미흡기관에 대한 제재조항 마련
  - 나. 검진기관 평가 거부기관 제재 강화
    - 1) 검진기관이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경하여 (업무정지 1개월까지) 고의로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이에, 평가를 거부할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지정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 다. 검진기관 평가체계 및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재평가 근거 마련
    - 1) 현행, 평가주기는 3년 기준이나, 평가 결과 미흡기관에 재평가를 위해 수시평가 제도를 도입
    - 2) 평가방법으로 서면과 방문조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검진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방법을 추가하고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10.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9. 5.                      • 마감일자 : 2018. 10. 15.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 조항 신설과 검진기관 평가를 거부하는 병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질 높은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운영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평가결과 미흡기관 행정처분 신설(삼진아웃제 도입)

- 1) 검진기관 평가결과가 ‘미흡’ 등급(평가점수 60점 미만) 받아도 검진기관 자격이 유지되어 미흡기관에 대한 퇴출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미흡기관에 대한 제재조항 마련

나. 검진기관 평가 거부기관 제재 강화

- 1) 검진기관이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경하여 (업무정지 1개월까지) 고의로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평가를 거부할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지정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다. 검진기관 평가체계 및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재평가 근거 마련

- 1) 현행, 평가주기는 3년 기준이나, 평가 결과 미흡기관에 재평가를 위해 수시평가 제도를 도입
- 2) 평가방법으로 서면과 방문조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검진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방법을 추가하고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1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9. 5.
- 마감일자 : 2018. 10. 15.

○ 현행 「직업안정법」 상 신고·등록·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의 폐업을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폐업신고서 제출 시 기존 신고확인증·등록증·허가증을 예외 없이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분실·훼손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서류를 재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업안정법」 상 신고·등록·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폐업신고 시 첨부자료 제출의무 완화

- 1) 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 시 의무적으로



○ 주요내용

가. 정부광고 연간계획 수립 등의 지원(안 제3조)

- 정부기관등의 장이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간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을 위해 정부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광고의뢰(안 제4조)

-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시행하려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일, 의뢰절차,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

다. 홍보매체의 선정(안 제5조)

-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를 선정시에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매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료요청(안 제6조)

- 홍보매체 선정을 위하여 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발행부수 및 유가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마. 소요경비 지출(안 제7조)

-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함.

바. 유사정부광고 등(안 제8조)

- 정부기관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사정부광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광고의뢰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다만 유사정부광고 중 그 특성상 광고의뢰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의뢰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후제출하도록 하여 유사정부광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업무 위탁(안 제9조)

- 정부광고 업무의 공공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광고를 위탁하는 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지정하고, 해외홍보매체를 이용한 정부광고 업무 등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른기관의 요청(안 제2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에 포함되지 않는 헌법기관 등에서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홍보매체(안 제3조)

-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뉴스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 법률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홍보매체 이외에 간행물, 전단, 영화, 문화시설, 전자출판물 등 정부광고가 가능한 매체를 추가로 정함

다. 정부광고 연간계획 수립등의 지원(안 제4조)

- 정부기관등이 매년 수립하는 연간계획의 서식은 수탁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 제공하도록 함

라. 광고의뢰 서식(안 제5조)

- 정부기관등이 별표서식 1에 따라 광고를 의뢰하도록 함

마. 홍보매체의 선정(안 제6조)

-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의 선정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함

바. 협찬시행(안 제7조)

- 수탁기관은 방송프로그램 관련 협찬 시행을 위해 정부기관등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매체 이외의 홍보매체에 협찬을 제공한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협찬에 필요한 제작물을 수탁기관에 제공하도록 함

사. 민간과 협력(안 제8조)

- 수탁기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민간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경우 민간에 지급하는 대가를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가 10억 이상 30억 미만인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60, 30억 이상인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함

아. 중소기업 지원(안 제9조)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등 광고 관련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

감하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1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9. 7.                      • 마감일자 : 2018. 9. 27.
-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25. 시행)함에 따라 보험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보험의 종류 및 가입주체(안 제13조의3제1항)
    - 보험의 종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으로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별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자 함.
  - 나. 보험의 보장범위 등(안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를 모두 보장하도록 하되,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 가능하게 하고자 함.
  - 다. 보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안 제13조의3제4항부터 제7항)
    - 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험사가 약관 등 보험 운영안 제·개정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소비자 및 성능·상태점검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 선지급제 및 보험사의 가입신청 거절 금지를 도입하며,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및 관계기관 간 전산자료 공유 등 보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1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9. 7.                      • 마감일자 : 2018. 9. 27.
-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함에 따라 보증범위 등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고,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매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0조의2)
-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를 고시하도록 하고, 보험사의 가입신청 거부 가능사유 및 보험금 선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함.
- 나. 매매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21의2)
- 청년창업 및 소자본창업 지원을 위하여 전시시설 면적을 감면받기 위한 조건을 기존 5인 공동창업에서 3인 공동창업으로 완화하고자 함.

## 18.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9. 10.                      • 마감일자 : 2018. 10. 22.
- 먹는샘물 광고제한 관련 조항이 일몰규제로 관리되고 있으나, 관련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일몰규제 근거 조항에 포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일몰규제 조항 추가(안 제45조제12호의2 신설)
- 동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먹는샘물 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의 일몰규제 재검토기한을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설정

## 1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9. 10.                      • 마감일자 : 2018. 10. 2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9호에 따라 보급확대가 필요하고 발전기에 적합한품질 성능 및 안전성이 확인된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의 한 종류로 인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안 제3조의3 신설 등)
- 나. 현재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지정된 발전용 바이오중유시범보급 생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신설)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9. 10.                      ● 마감일자 : 2018. 10. 22.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9. 10.                      ● 마감일자 : 2018. 10. 22.
-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9년 1월 1일 시행 예정)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될 시·도지사를 명시하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운데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한 것은 그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시·도에 설치될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수행 지자체 명시(안 제5조의2 ~ 제5조의6)
    - 1) 2018년 1월 16일에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가 전담하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시·도지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 2) 이에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가맹분야 관련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들로 하여금 관할지역 내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대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향후 업무를 수행할 시·도가 추가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3) 아울러, 지자체 간에 일관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권한 위임(안 제35조)

- 1)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 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부과·징수하고 있음.
- 2) 2018년 1월 16일에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변경 등록·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시·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하여,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다.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세부 운영규정 마련(안 제19조, 제22조, 제23조)

- 1) 2018년 3월 27일에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1월 1일 부터 각 시·도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며, 같은 사안에 대해 복수의 협의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될 경우 개정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가 조정을 진행하게 됨.
- 2) 이에, 개정안에서는 조정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정 신청서에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조정신청이 중복 접수된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가 선택하지 않은 협의회에서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 절차가 불필요하게 중복 진행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하였음.

- 3) 아울러,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 5항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을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당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9. 10.                      ● 마감일자 : 2018. 10. 22.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8.3.27. 공포, 2019.1.1. 시행)에 따른 지방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 주요내용
  - 가. 지방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 기재사항 및 분쟁조정 종료시의 보고 등 세부 규정 마련 (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 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공급업자의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안 제19조의2)
  - 다.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안 별표2)

## 2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9. 11.                      • 마감일자 : 2018. 10. 22.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 이행실태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자의 이행실태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3조제2항)
    - 1) 이행실태 정기점검의 방법 및 시기 규정
    - 2) 이행실태 정기점검의 대상 규정
    - 3) 이행실태 정기점검의 내용 규정
    - 4) 그 밖의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9. 11.                      • 마감일자 : 2018. 10. 22.
-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로·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한 업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의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구조고도화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투자를 활성화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원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한 업종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지원시설구역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 도입(안 제6조6항)
  - 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비율 확대
    - 1)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의 면적비율을 30%로 상향 조정(안 제36조의4제4항제1호)
    - 2) 복합구역 안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

- 비율을 50퍼센트로 상향 조정(안 제36조의4제4항제1호의2 신설)
- 다. 구조고도화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제도 개선
- 1)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복합구역으로 용도 변경시 실질적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한정하여 개발이익을 산정 (안 제58조의5제1항)
  - 2)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이익 재투자 비용의 50퍼센트를 경감 (안 제58조의5제4항)

## 2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9. 11.
  - 마감일자 : 2018. 10. 22.
-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의무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위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 에서 ‘100분의 50이상’ 으로 상향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 투자보고서의 교부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18. 7. 26.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절차 및 내용을 정하는 한편, 일반 국민의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시행령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공모의무 예외 조건을 완화(안 제12조의3 제25호)
    - 1) 법 개정으로 공모의무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투자비율이 100분의30에서 100분의 50이상으로 상향되어 별도로 시행령에서 규정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100분의 50초과 투자비율을 삭제
    - 2) 공모의무예외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자산관리회사가 동일해야 하는 조건은 과도한 규제로 자산관리회사 동일조건을 삭제하도록 함
  - 나. 일반국민의 투자가 가능한 투자방식에 대하여 공모의무 예외를 적용(제12조의3 제28호, 제29호,제30호 신설)
    - 1) 자산의 70% 이상을 하나 이상의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안 제12조의3 제28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수를 초과하는 위탁자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 하나 또는 둘이상의 신탁업자(안 제12조의3 제29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해당되지 않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안 제12조의3 제30호)

다. 투자보고서의 종류, 작성시점 등을 규정하고 세부 작성방법, 서식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위임(안 제40조 제1항 개정)

1) 투자보고서의 작성 시점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날 이후부터 해당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회계기간말일 및 3개월 단위로 종료되는 날 작성(안 제40조제1항 1호)

2) 투자보고서의 종류에 따른 세부 작성방법·서식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안 제40조제1항 2호)

라. 투자보고서의 포함되는 중요한 기재사항 정비(안 제40조제3항 개정)

1) 투자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항목을 정비하고 회계용어(대차대조표→재무제표)에 맞추는 등 개선 (14항목→12항목으로 축소)

2) 투자보고서의 가독률을 높이고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서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예외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제5호 증권소유현황, 제6호 부동산투자개발사업 현황, 제10호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소송 현황, 제11호 특별관계인과 거래현황)

마. 정보의 공시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반복 규정하고 있고, 법률과 시행령간의 체계 정합성이 낮아 이를 보완할 필요 (안 제40조의2 제1항)

1) 변경된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경력을 변경한 날부터 최근 3년으로 규정(안 제1호)

2) 서면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정보공시를 하는 경우 제19조제1항의 판매회사, 제19조제2항의 사무수탁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365조의 정의개서대행회사가 교부

(안 제2호)

3) 정보공시와 관련된 서식·작성방법 등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안제3호)

바. 전자우편·서면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 예외사항 규정 (안 제40조의2 제4항)

1) 일반개인에 서면 통보 시 대상자선정의 어려움, 과도한 공시비용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 개정(법제37조제4항제2호)으로 공시 예외 사항 마련

2) 주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장리츠, 투자액 100만원미만의 소액투자,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경우 등의 경우 예외

사. 투자보고서 접수 업무 위탁 (안 제47조의6)

1) 투자보고서를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있으므로, 리츠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감정원에 투자보고서 접수 업무를 위탁할 필요

2) 투자보고서 접수 업무 위탁대상을 한국리츠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

## 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9. 13.      • 마감일자 : 2018. 10. 23.

○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718호, 2018. 8. 14.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변경(안 제2조)

1) 정부가 수립·시행하도록 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국제협력과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2)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변경할 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정함.

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1)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를 정함
-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업무(안 제8조)

- 1)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공무원이나 임직원 파견 요청 근거를 마련함.

라. 실태조사의 실시(안 제9조)

- 1)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와 절차를 정함.

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구체화함.
- 2)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는 학교 등의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의 근거 규정을 정함
- 3)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기간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함.

바.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안 제14조)

- 1)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배출시설의 가동중지 요청은 1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7일 전에 통지하도록 함.

사. 취약계층의 범위 및 보호대책(안 제15조)

-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정하고,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구체화함.

아. 자료제출 검사 대상(안 제16조)

-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장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 단체 및 사업자의 범위를 정함.

자. 권한의 위임 위탁(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1)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 2) 광역적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자료제출 검사 등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함.
- 3)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 장거리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실태 조사 및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 4)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정보시스템의 운영, 대기오염방지시설 기술지원 등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2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9. 13.

• 마감일자 : 2018. 10. 23.

○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718호, 2018. 8. 14.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미세먼지 생성물질(안 제2조)

- 1)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미세먼지 생성물질”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이외에 암모니아를 추가함

#### 나. 미세먼지 배출원(안 제3조)

-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외의 미세먼지 배출원은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분류체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1) 시 도지사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이 고시된 후 1년 이내에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2) 시·도지사는 매년 7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3) 환경부장관은 추진실적 평가결과,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2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도록 함.

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1) 미세먼지 배출원 발굴 및 배출계수 개발,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검증 개선, 조사연구 등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명시함
- 2)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정보를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 배출량 통계자료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

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1) 시·도지사가 발령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기준과 해제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 2) 비상저감조치 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함
- 3)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의 보고 절차 및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 방법 및 절차를 정함

바.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안 제13조)

- 1)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할 때와 결과를 제출할 때 필요한 별지 서식을 정함.

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원 등(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1)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과 지정·변경·해제 절차 등을 구체화함.

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 1)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정 취소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 2)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측정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구체화 함
- 3)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대상 등급 규격 표시 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 2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9. 13.
- 마감일자 : 2018. 10. 23.
- 도장공사는 주로 주거지 인근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도장공사로부터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대상 중 건설업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포함(안 제44조 제5호)
    - 비산먼지 발생 사업 중 건설업에 도장공사를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함

## 2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9. 13.
- 마감일자 : 2018. 10. 23.
- 주거지 인근에서 이루어져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빈발하는 도장공사, 대수선 공사,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관리수단이 부재하여 이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으로 포함 관리할 필요가 있고, 최근 화력발전소 저탄소 석탄재 비산에 따른 주민 피해 발생, 건설공사장 관련 민원의 지속적 증가 등 비산먼지 관리 개선을 위하여 비산먼지 억제 시설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병원, 학교 등 주변 소규모 공사 관리 근거 도입(안 제57조 단서)
    - 1) 병원, 학교 등의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 없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군·구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
  - 나. 변경신고 대상 규제 합리화(안 제58조제2항제3호)
    - 1) 최초로 신고한 사업의 규모를 10%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신고 하도록 개선하되,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

별관리사업장은 현행과 동일하게 10% 미만 규모 변경시에도 신고하도록 단서 마련

다. 집중 민원 발생공사를 신고대상 사업으로 포함(안 별표 13)

1)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도장공사, 연면적 1,000m<sup>2</sup> 이상인 대수선공사, 공사면적 합계가 1,000m<sup>2</sup>이상이면서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를 신고대상으로 포함

라. 비산먼지 억제 시설조치기준 강화(안 별표 14)

1) 화력발전소 저탄시설 옥내화, 도장작업시 롤러방식 사용 의무, 저공해 조치 완료 건설기계 사용의무 도입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위한 시설조치기준을 강화하고, 방진망 개구율 명확화(40% 상당) 등 일부 시설조치기준을 합리화

### 3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9. 13.

• 마감일자 : 2018. 10. 23.

○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 '18.2.21)됨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긴급관세조치·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서명일부터 1년으로 정함.

다.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결과의 통지기간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로 정함.

라.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기간,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및 점진적 완화의무 등을 정함.

마.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체약상대국에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와 관련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도록 함.

### 3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9. 13.

• 마감일자 : 2018. 10. 23.

○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18.2.21)됨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정함.

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되, 단일 서식을 정함.

다.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45일 이내에 새로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

라.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간접조사와 서면·현지조사로 규정함

마.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나 상용견품과 인쇄광고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중미 공화국들로 물품을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회신기간을 중미 공화국들의 관

세당국이 확인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150일로 정함.

### 3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9. 13.                      • 마감일자 : 2018. 10. 23.
- 전체 자영업자 중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최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 특례 적용 업종을 확대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특례적용 업종에 음식점업, 도매업, 소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4개 대표자영업종 추가(안 제122조제1항 제2호자목부터 타목까지 신설)

### 33.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9. 14.                      • 마감일자 : 2018. 10. 24.
-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화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하여 환경교육사업의 일관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환경교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661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정부위원 감축 및 민간위원 확대(안 제5조)
    - 1) 환경교육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의견반영과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위원을 감축(11→8명)하고 민간위원을 확대(8→11명)
  - 나.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 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 신설(안 제6조)
    - 1) 중앙부처 등 실무 담당자간 논의를 활성화하고,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 설치

다.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위촉위원 해촉규정 신설(안 제9조)

- 1)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

라.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11조)

- 1)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지정심사위원회” 를 분과위원회로 두도록 함

### 34.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9. 14.

● 마감일자 : 2018. 10. 24.

-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화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환경교육사업의 일관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환경교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661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 1)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교육진흥 실무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새로이 규정

나.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으로 변경(안 제6조)

- 1) 법 개정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로 변경됨에 따른 용어 변경

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 및 인증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7조, 제8조)

-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명칭 변경
- 2)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사업에 대한 협의,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5 신설)
  -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효율성 및 사업의 성과 등 평가
  - 2) 장기간 대규모 예산 투입 및 유사·중복 조정 및 현안 관련 사업 등에 대해 심층 평가
- 나.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의6~12 신설)
  - 1) 위원의 구성, 임기, 해촉 등 심의회 구성과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운영 방법 및 심의사항
- 다. 중소기업 지원 신설·변경사업 협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의13~15 신설)
  - 1) 신설·변경되는 사업에 대한 협의 요청 내용 및 절차
  - 2) 협의 운용방안 마련 및 협의 결과에 대한 심의회 보고 등 결과 처리
- 라.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출 서류 등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 16조)